

대학원 산업공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산업공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산업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산업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과목개설)

제6조 (교·강사 배정)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학위의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국내 학술지 또는 SCI(E)급 학술지 1편 이상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의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국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SCI(E)급 학술지 1편 이상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의 종합학력시험이 필기시험 또는 구두시험 형태로 시행된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으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하여야 한다.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 단, 연계과정생은 2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제14조 (예비발표)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연구논문(학위논문대체)의 심사절차는 학위논문절차에 준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석사학위 연구논문(학위논문대체)의 연구보고서는 학위논문 형식을 따르며,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단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지 않고, 학위 논문 온라인 등재는 없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